

일본의 최근 특정보건용식품 시장동향

오사카지사 자체기획단신 13호 (2016.7.28.)

특정보건용식품이란...?

- 특정보건용식품이란 신체의 생리학적 기능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기능성분(관여성분)을 포함하는 식품이며 혈압, 혈중콜레스테롤 등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도와주거나 또는 장의 상태를 개선하는 등 특정한 보건용도로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을 일본 정부(소비자청)로부터 허가받은 식품.
- 특정보건용식품으로서 판매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최종제품마다 식품의 유효성, 안전성, 표시사항에 대해 일본 정부의 심사 및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음.

※ 단, 일본내 판매용은 허가, 외국 판매용은 승인

<특정보건용식품의 로고마크>

특정보건용식품 (소비자청 허가) *일본내 판매용	조건부 특정보건용식품 (소비자청 허가) *일본내 판매용	특정보건용식품 (소비자청 승인) *외국 판매용	조건부 특정보건용식품 (소비자청 승인) *외국 판매용

특정보건용식품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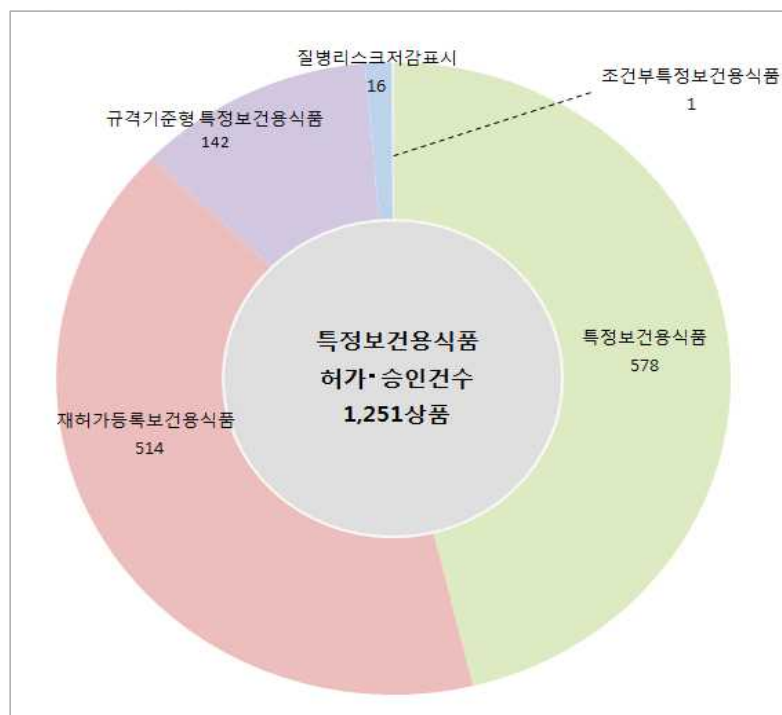
- 현재 특정보건용식품으로 허가를 받은 것은 청량음료나 조미료 등의 가공식품이 중심이며, 신선농산물도 특정보건용식품으로 인가신청은 가능하나 현실적인 문제로서 농산물은 생산방법이나 산지의 여러 가지 상황 등의 영향을 받아 관여성분의 품질이나 안전성의 확보가 어려워 현재로서는 신선식품은 특정보건용식품 허가를 받은 상품은 없음.

특정보건용식품	✓ 건강증진법 제26조 제1항의 허가 또는 동법 제29조 제1항의 승인을 받아 식생활에서 특정한 보건의 목적으로 섭취하는 자에 대해 그 섭취에 의해 해당 보건의 목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를 표시한 식품 ✓ 개별 상품에 대해 소비자위원회(소비자행정전반에 대해 감시기능을 가지는 독립한 제 3자 기관)의 개별심사, 국가(소비자청)에서의 허가가 필요함.
특정보건용식품 (질병리스크 저감표시)	✓ 관여성분의 질병위험 저감효과가 의학적, 영양학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경우 질병위험저감표시를 인정하는 특정보건용식품 ✓ 인정되어 있는 관여성분은 칼슘(골다공증의 리스크저감)과 엽산(척추갈림 등 신경관 폐쇄 장애를 가지는 아이가 생기는 리스크저감)
특정보건용식품 (규격기준형)	✓ 특정보건용식품으로서 허가실적이 충분한 경우 등 과학적 근거가 축적되어 있는 관여성분에 대해서 규격기준을 정하여 소비자위원회의 개별심사 없이 사무국에서 규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허가하는 특정보건용식품 ✓ 대상성분은 난소화성덱스트린, 폴리덱스트로오스, 구아검분해물(모두 식물섬유), 대두올리고당, 프락토올리고당, 유과올리고당, 갈락토올리고당, 크실로올리고당, 이소말토올리고당.
조건부 특정보건용식품	✓ 특정보건용식품의 심사에서 요구되는 유효성의 과학적 근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일정 수준의 유효성이 확인된 식품을 한정적인 과학적 근거라는 취지의 표시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대상으로 인정하는 것 (표시 예: ○○를 포함하고 있어 <u>근거는 확립되어 있지 않으나</u>, △△에 적합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

특정보건용식품 현황

- 2016년 4월 12일 시점에서 제도가 시행된 1997년부터 1,251개의 상품이 특정보건용식품으로서 허가·승인(허가 1,250건, 승인 1건)되어 있음. 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은 30%정도로 추정되고 있음.
- 주력 판로인 슈퍼마켓, 편의점에서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이미 판매가 종료된 상품이 많다는 점, 그리고 과자나 청량음료 등 기호성이 높은 식품은 계절·기간한정의 상품을 전개하는 움직임이 보이며 재허가 등 특정보건용식품으로서 다양한 맛의 상품에 대해 허가를 득하고 있다는 것이 허가·승인건수가 많은 반면에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 적은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음

<특정보건용식품 허가·승인건수 내역>



※ 「재허가등특정보건용식품」은 이미 특정보건용식품으로 허가받은 상품으로 상품명, 맛만을 단순 변경하는 경우 규격기준형 특정보건용식품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청의 심사만으로 허가 받을 수 있음.

특정보건용식품 시장동향

- 특정보건용식품 시장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4월에 발매된 특정보건용식품 콜라음료(기린베버리지 「기린 메츠콜라」) 등의 히트를 계기로 대형음료제조업체 각사는 청량음료의 특정보건용식품의 신상품 출시와 판촉을 적극화한 것이 계기가되어 2012년도부터 2014년도에 걸쳐 시장이 확대되었음.

<특정보건용식품 시장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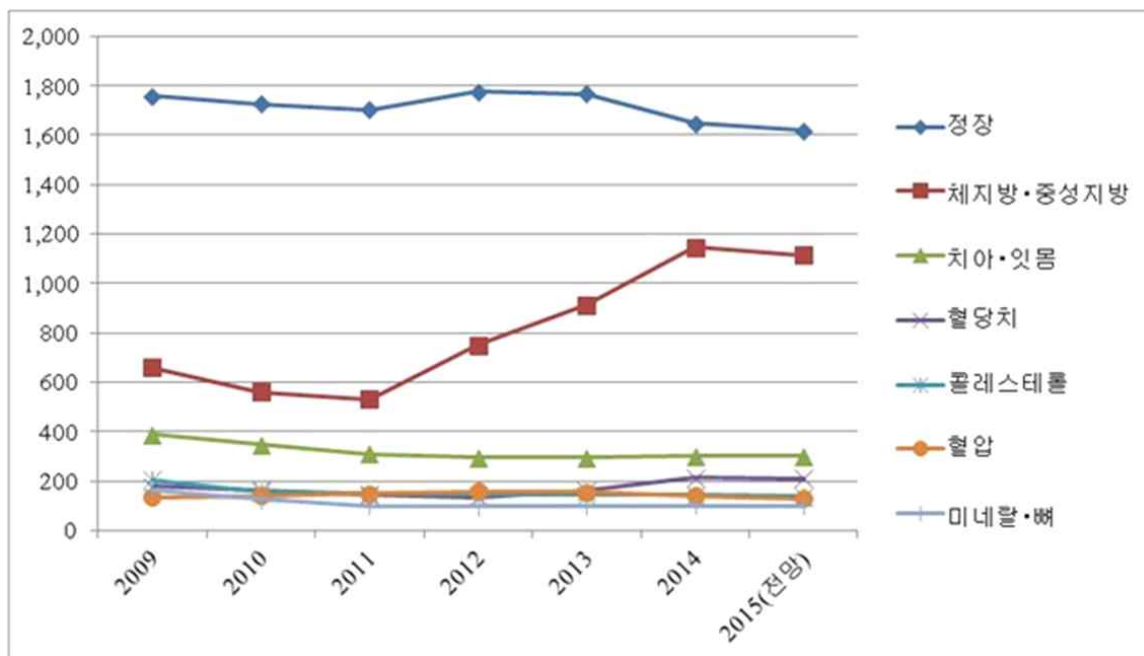
- 2015년도에는 신상품 발매가 일단락되면서 다시 축소로 전환되었다고 추정되며, 이는 특정보건용식품 자체가 비교적 취득하기 쉬운 규격기준형 특정보건용식품을 제외하고 취득을 위한 상당한 기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특정보건용식품에 대해 적극적인 시장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대형기업의 일부분 등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2015년 4월 새로운 보건식품관련 제도로써 기능성표시식품제도가 시행되었음.

- 기능성표시식품제도는 사업자책임 하에 식품 안전성과 기능성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 등 필요한 사항을 상품 판매 이전에 소비자청에 신고함으로써 기능성표시가 가능하게 되는 제도이며 특정 보건용식품에 비해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기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도 새롭게 보건식품을 발매하는 등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 건강식품시장은 확대되고 있으나 새로운 특정보건용식품 신청은 향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2015.7.19. 현재 기능성표시식품 등록 수 350건

보건용도별 시장동향

<특정보건용식품의 보건용도별 시장규모>



- 특정보건용식품의 보건용도별 시장규모는 폭넓은 세대의 수요가 있는 정장(整腸)관련 상품의 시장규모가 가장 큼. 유산균, 올리고당 등이 주 관여성분이며 요구르트나 유산균음료, 올리고당 시럽 등의 제품군이 있음. 또한 최근 장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정장은 물론 면역력 향상 등 다양한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특히 유산균의 건강 효과에 대해 대형 유제품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광고 등 적극적인 PR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다만 유산균의 정상효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일본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있다보니 새롭게 특정보건용식품으로 허가를 취득하여 정상효과를 상품패키지에 기재하는 움직임이 최근 둔화되고 있으며, 특정보건용식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산균의 기능성(독감예방, 푸린체 억제, 알레르기 억제 등)을 소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
- 체지방·중성지방관련은 여성은 다이어트, 남성은 생활습관병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체지방·중성지방 감소에 대한 수요가 높아 최근 청량음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상품 투입이 이루어지면서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음. 특히 청량음료 대기업인 산토리식품인터내셔널, 일상용품 전문브랜드인 카오가 전개하는 특정보건용식품 브랜드 「헬시아」는 적극적인 방송광고의 투입, 판촉활동을 실시하고 있어 경쟁이 더 심화되고 있음.



- 치아건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츄잉검의 상품 전개를 볼 수 있으며 대기업인 롯데와 점유율 제2위인 몬델리즈재팬이 대부분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음. 그동안 오랜 기간 시장규모가 축소 일변도를 걸어왔으나 최근 양사가 특정보건용식품 상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것을 계기로 축소에 제동이 걸리고 있음.

- 혈당, 콜레스테롤, 혈압은 생활습관병 예방이라는 의식이 고조되면서 시장규모는 증감을 반복하면서도 견조하게 추이하는 경향이 보임. 다만 수요층은 타 제품군 대비 한정되어 있어 큰 폭으로 시장이 확대되기는 기대하기 어려우나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시시점

- 오랜 기간 일본의 건강식품시장을 지지해온 특정보건용식품은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통업체에서 별도 코너를 만드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2015년 4월에 시행된 기능성표시식품제도로 이행해갈 것으로 전망됨.
- 일본의 건강식품시장은 탄탄한 내수시장의 수요와 정책적인 뒷받침에 따라 향후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국식품도 일본 식품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건강을 모티브로 한 차별화를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정부차원에서도 국내 건강식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R&D지원 등을 활발히 할 필요가 있음

(참고 : 일본 소비자청, 야노경제연구소)